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43
------	------

제출년월일 : 2022. . .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관리과)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및 교육감 일정관리, 민원처리 등 비서실 사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별표 3)

직종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일반직	5급 이하	2,578	5급 이하	<u>2,577</u>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2	5급 상당 이하	<u>3</u>	비서관·비서

3. 개정안: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안 별표 3): 붙임

나. 입법예고: 2022. 6. 30. ~ 7. 20. (20일, 의견 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라.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사항: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종별	단위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 각급학교
	직급별					
총 계			2,886			
정무직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일반직 계		2,609			
	3급		7	7		
	4급		23	20	3	
	5급 이하		2,577			
	전문경력관		2			
연구직	연구직 계		7			
	연구사		7			
별정직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	특정직 계		266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0	23	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3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종별	단위기관별		총계	본청 (삭제관 포함)	교육 자원청	공립 각급 학교	직종별	단위기관별		총계	본청 (삭제관 포함)	교육 자원청	공립 각급 학교	직종별	단위기관별		총계	본청 (삭제관 포함)	교육 자원청	공립 각급 학교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총 계			2,886				총 계			2,886				총 계			2,886						
정무직	정무직 계		1	1			정무직	정무직 계		1	1			정무직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일반직 계		<u>2,610</u>				일반직	일반직 계		<u>2,609</u>				일반직	일반직 계		<u>2,609</u>						
	3급		7	7				3급		7	7				3급		7	7					
	4급		23	20	3			4급		23	20	3			4급		23	20	3				
	5급 이하		<u>2,578</u>					5급 이하		<u>2,577</u>					5급 이하		<u>2,577</u>						
	전문경력관		2					전문경력관		2					전문경력관		2						
연구직	연구직 계		7				연구직	연구직 계		7				연구직	연구직 계		7						
	연구사		7					연구사		7					연구사		7						
별정직	별정직 계		2				별정직	별정직 계		3				별정직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2					5급 상당 이하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	특정직 계		266				특정직	특정직 계		266				특정직	특정직 계		266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0	23	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0	23	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0	23	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36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36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36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7% 이상	0.3% 이내

비고 : 일반직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을 포함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비율	50% 이내	50% 이상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 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요인

○ 해당없음

-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1명 감원하여 감원된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재정 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에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을 감원하여 감원된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 이승용(053-231-0654)